

■ 서류제출 방법(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25.06.17.(화) ~ 06.23.(월)]내 등기우편[2025.06.23.(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으로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으며, 일반우편으로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는 첫 장에 청약접수증 또는 신청정보(단지명,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등)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LH부천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4539)
- * 본 안내문에는 제출서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있으며, 개별 신청자가 본 안내문에서 예시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신청자격별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05.1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900101-1234567(O) / 900101-1***** (X)]

■ 공통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2025.05.14)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정된 후 제출기한 내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 시점에 함께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부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부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1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부
주민등록등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1부

주민등록초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 시 제출 불요) 	1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부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1부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상향을 인정 받으려는 경우 	1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단독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원수가 2명인 신청자가 전용 면적 5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1부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임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별첨5 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별첨5 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사회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증명원(생계,의료)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차상위증명서(주거,교육, 차상위 수당대상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국가유공자(확인원, 영구임대입주지원대상자 확인서)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계약서 및 저축가입확인서)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 해당구청 건강보험공단 보훈청

<p>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p>	<p><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행정복지센터</p>
---------------------------	---	---------------

신청자명 :	핸드폰번호 :
단 지 명 : () (주택형 :)	접수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할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정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에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임장

주택의 표시 : _____ 국민임대주택

위 표시 임대주택의 임대차 신청에 관하여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임대 신청 업무의 일체를 위임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 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자(일의 처리를 맡기는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수임자(일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 작성 시 오류가 많으므로 정확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은 **점선 안에 정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을 감안, **1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은 불가**
- **신청자 자신이 조회 대상일** 경우 양식 내 「신청자 인적사항」과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자」란에 **'본인'을 기재 후 모두 작성**
- 양식 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곳 모두 정자로 서명**
-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
 - **만일 추가 세대원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추가하여 작성**
- 작성 시 연필 또는 연한 볼펜보다는 선명한 플러스펜 사용을 권장
-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 해당사항이 없어도 아니오 체크 및 서명 후 반드시 제출
- 부채란은 금융부채가 아닌 **본인이 임대인으로서(상가, 오피스텔, 주택-주택 판정 제외된경우 소유 경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예시>

※ 점선안에 글자나 숫자가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

※ 가족란은 동일인이 전부 기재하지 말고, 세대원 각자가 작성 요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가)) <개정 2016. 12. 29.>

[양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홍길동	8 0 1 2 1 4 - 1 X X X X X X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XXX-XXX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점선 안에 정자로
자필기재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외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 실을 동의(제3계 정보 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
본인	홍길동	8 0 1 2 1 4 - 1 X X X X X X	홍길동	홍길동
배우자	김하니	8 2 0 4 3 0 - 2 X X X X X X	김하니	김하니
자	홍세미	9 1 0 8 0 9 - 2 X X X X X X	홍세미	홍세미
자	홍정민	9 2 1 1 1 1 - 1 X X X X X X	홍정민	홍정민

계약자 및 등본 내 기
재된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서명(대리서명불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서명

추가 세대원 기재가
필요 할 경우 동의서
를 1장 추가하여 작성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제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신청이 종료된 금융정보제공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들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와 자녀 포함·비양육 금융정보를 국외로 제공받으려 할 경우 동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들이 금융정보를 국외로 제공받으려 할 경우 사실을 통지하게 할 것인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합니다(통지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들이 금융정보를 국외제공 통지가 되었는지 무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제출일로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 입력 오류시 새 양식에 작성
※ 볼펜이 번지지 않도록 작성 요망

2017년 06월 15일

금융회사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공란이 없도록 기재
EX) 2017. 6. 15 -> X
2017. 06. 15 -> O

향후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기재 및 미제출시 당첨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